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3. 12. 12 선고 2021가단2317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진

피고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23. 11. 7.

판결 선고2023. 12.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19. 6. 9.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 8. 13. 접수 제22780호, 제227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9. 11. 27. 원고들과 각각 차용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차용금액 : 일금 오천만 원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이자는 연 4%로 정하고 매월 마지막 날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한다(첫 이자 지급시기는 2019. 12. 31.로 한다).
2. 원금의 중도변제는 2020. 6. 30.까지 2,500만 원으로 하고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키로 한다(중도상환대금의 재원은 경북 칠곡 소재 E의 면허시험선 3대의 매각분으로 한다. 단, 재원의 여하간 중도금액 2,500만 원을 변제시 지급 충족된 것으로 한다).
3.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과 이자에 대해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4. 중도상환금액을 제외한 차용잔액 2,500만 원의 상환은 2021. 2. 28.까지로 한다(잔액상환시, 2018. 5. 9.부터 2019. 11. 30.까지 지연이자 300만 원은 별도 지급한다).

채권자 원고 A 또는 원고 B1) 채무자 D

나. 원고들은 ① 2017. 7. 13. F에 2,000만 원, G에게 3,000만 원, ② 2018. 4. 20. H에 700만 원, ③ 2018. 4. 25. D에게 1,300만 원, ④ 2018. 5. 1. D에게 800만 원, ⑤ 2018. 5. 9. D에게 2,2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다. 망 I(2019. 6. 9. 사망)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8. 13. J(3/13 지분), K, L, M(각 2/13 지분) 및 피고(4/13 지분) 앞으로 2019. 6.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 2,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D은 원고들에게 태국 파타야에서 요트를 건조하여 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요트 건조와 관련하여 위 기초사실 나.항과 같이 각각 5,000원을 수회에 나누어 송금받았고, 이후 위 요트 사업 관련 절차들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D과 피고는 망 I의 상속인들로서, 이 사건 차용증은 망 I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및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작성되었으나, 그 이전에 원고들이 D에게 각각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은 송금은 D의 기망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D에 대한 각 5,000만 원의 채권은 ① 위 상속재산협의분할 이전에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서 이미 성립되어 있었거나, ②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인 2/13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전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참조).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3100 판결 등 참조).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은, 원고들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이후인 2019. 11. 27.에 성립하였으므로, 사해행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의 실질이 D의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원고들의 주장을, 사기로 인한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 주장으로 선회한다)이라거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당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 또는 각 5,000만 원 상당의 금전지급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들과 D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투자계약이 체결되었고, 요트 건조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D이 원고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D은 원고들 주장의 사기혐의에 관하여 2023. 3. 14.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다).

2) D이 2019. 11. 27.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원고들에게 각각 5,000만 원에 관한 지급채무부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이 자신의 기망행위를 인정했다거나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이전에 투자금 상당의 반환채권의 발생을 인정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피고는, 실제 투자금을 요트 건조 사업에 지출하였으며, D이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3) 원고들이 주장하는 투자계약상의 투자금이 반환이 예정된 투자금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협의분할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투자금 반환청구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나 법적 근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인경

별지

1) 원고들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각각 D과 작성하였다.